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8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농어촌민박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우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우선 지원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 및 지원 범위
3.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련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활성화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민박의 운영 현황, 이용 실태,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2.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 및 운영 컨설팅 지원 사업
4. 농어촌민박 선진사례 조사·연구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자

제8조(우수사업자 지원)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시설·안전·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농어촌민박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비용(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노 종 용